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2003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2004. 1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1. 최근 국제통상환경	1
2. 2003년 수입규제 동향	11
가. 총 괄 / 11	
나. 국별 동향 / 13	
다. 2003년 수입규제 특기사항 / 38	
3. 2004년 수입규제 전망	44
가. 총 괄 / 44	
나. 주요국별 전망 / 45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51

1. 최근 국제통상 환경

글로벌화의 진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글로벌화의 진전, 신흥 공업국들의 등장, 시장개방 확대, 일부 전통 산업의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경쟁국간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따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한나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전 세계적 과급효과를 가지는데, 2002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철강 세이프가드가 그 단적인 예
 - 신흥 공업국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공업과 기초 중공업 분야는 선진국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 상존
 - 현재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섬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전통산업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수출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세계 수출단가 변화 추이>

(단가지수 : 1995=100)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단가지수	100	99	93	88	88	89	86	87
변화율	11.2%	-0.6%	-6.1%	-5.7%	-0.4%	1.7%	-3.5%	1.4%

자료원 : WTO 세계무역통계, 주 : 1) 변화율은 전년대비, 2) 수출단가는 상품수출단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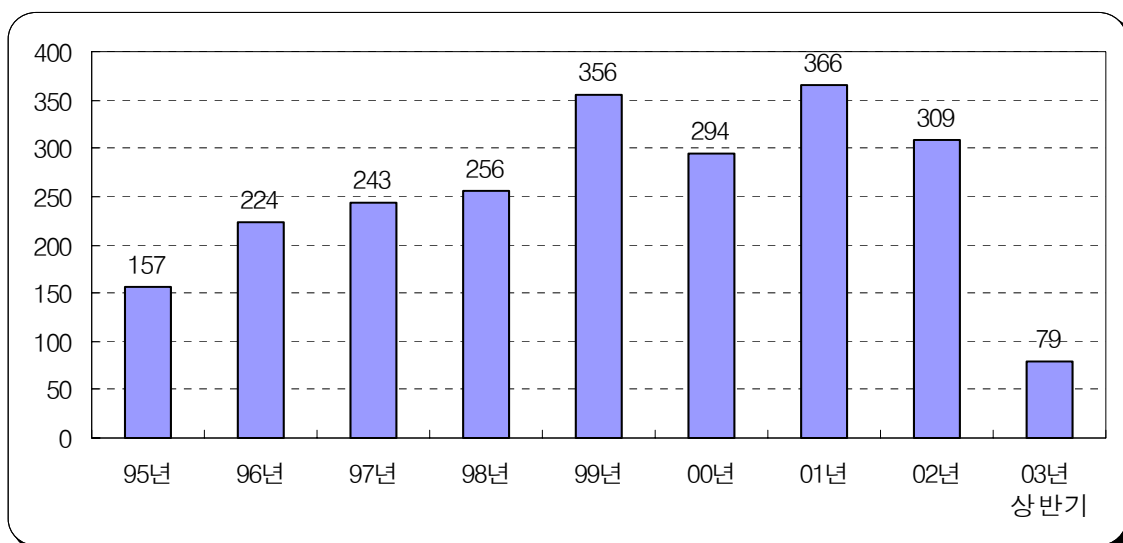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의 빈번한 활용

□ 글로벌화의 진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보호무역주의가 배태될 소지가 많은 토양 속에서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 분쟁해결절차 등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2. 3월에 발동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세계적인 철강분쟁, 美-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분쟁, EU의 바나나 수입 유통체제와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WTO가입 이후 중국의 반덤핑 조치 증가 등이 그 예

□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반덤핑 조치(조사개시 기준)는 2002년 309건, 2003년 상반기에 79건을 기록했으며, WTO체제 출범 이후 4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에 의해 총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2,284건이 발동되었음.

<세계 반덤핑 제소 현황>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은 인도, 미국, EU 등이며, 주요 피소국은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 나타남.

<주요 반덤핑 조치 발동국 및 피소국 현황>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상반기	합 계
세계 전체		157	224	243	256	356	294	366	309	79	2,284
주요 발동국	인 도	6	21	13	27	65	41	79	80	12	344
	미 국	14	22	15	36	47	47	76	35	16	308
	E U	33	25	41	22	65	32	29	20	3	270
	아르헨	27	22	14	8	24	45	26	14	0	180
	남아공	16	33	23	41	16	21	6	4	2	162
	호 주	5	17	42	13	24	15	23	16	1	156
주요 피소국	중 국	20	43	33	28	41	43	53	51	12	324
	한 국	14	11	15	24	34	22	23	23	8	174
	미 국	12	21	15	15	14	13	15	12	5	122
	대 만	4	9	16	10	22	16	19	16	5	117
	일 본	5	6	12	13	22	9	13	13	5	98
	인 니	7	7	9	5	20	13	18	12	1	92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2003년은 6월말 기준

- 2003년 상반기 기준, 세계 반덤핑 조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 제품,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등이 주된 규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2003년 상반기 주요 품목별 반덤핑 조치 발동 현황>

품 목	화학제품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제지류	의류/직물	합 계
건 수	26	15	10	8	5	79
비 중	32.9%	18.9%	12.6%	10.1%	6.3%	80.8%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2003년 들어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 급증과 2001년과 2002년의 반덤핑 조사 확산에 따라 각국이 신규 조사보다는 이미 제소된 건의 후속 조치에 치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반덤핑 조치 발동 현황>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건수	76	64	193	189	153	195	160	125	132	101	152	222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건수	300	242	215	157	224	243	256	356	294	366	309	79

자료원 :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3", 1995년 이후는 WTO, 03년은 상반기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최근 들어, 반덤핑 조치 주요 발동국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8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치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의 반덤핑 활용 빈도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는 이들 국가의 반덤핑 조치는 조사개시 기준으로 총 26건으로 전 세계 반덤핑 조치의 32.9%에 그쳤음.

- 반면,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최근 들어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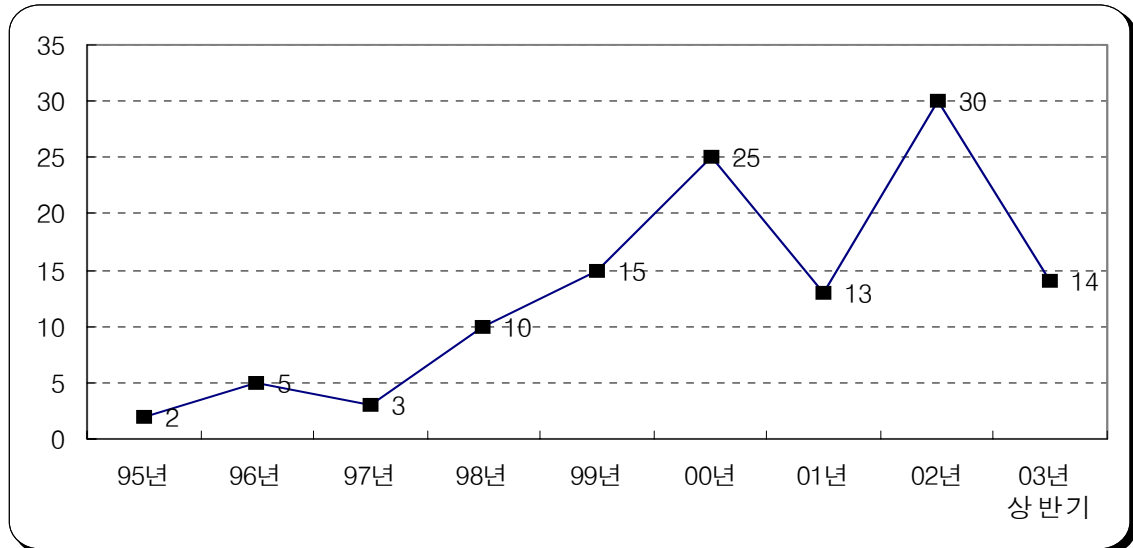
<반덤핑 조치의 선진국/개도국 비중 비교>

구 분	80년대 후반	1995~1999	2000	2001	2002	2003
선진국	90% 이상	38.7%	39.9%	42.3%	27.5%	32.9%
개도국	10% 미만	61.3%	60.1%	57.7%	72.5%	67.1%

자료원 :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3", 1995년 이후는 WTO, 2003년은 상반기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반덤핑 조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美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세계 세이프가드 발동 추이>



자료원 : Committee on Safeguard, WTO

주)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기준

-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치와 일종의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반덤핑 조치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는 반덤핑 조치 대신에 세이프가드를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세이프가드 발동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반덤핑 조치가 특정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수입규제 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규제 조치이므로 반덤핑에 비해 피해 규제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임.
- 또한,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용이하다는 것도 세이프가드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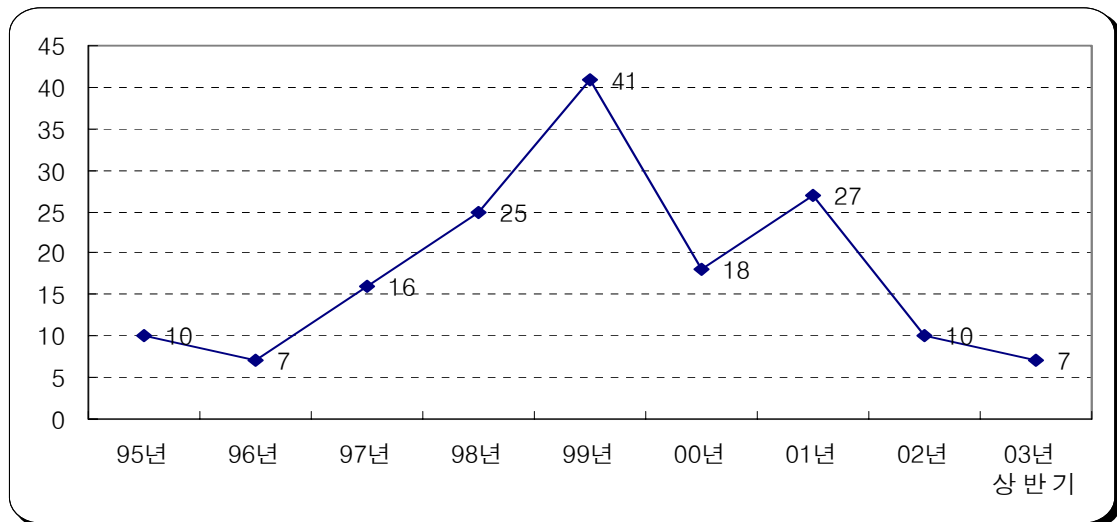
□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국제 통상환경에 훨씬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비록 공정한 무역행위일지라도 자국 산업이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자국산업 보호를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 반덤핑 조치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규제하려고 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규제조치이므로 규제의 파급효과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에 비해 훨씬 큼.

□ 상계관세에 의한 규제는 반덤핑 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상계관세 제소 추이>



자료원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주) 상계관세 조사개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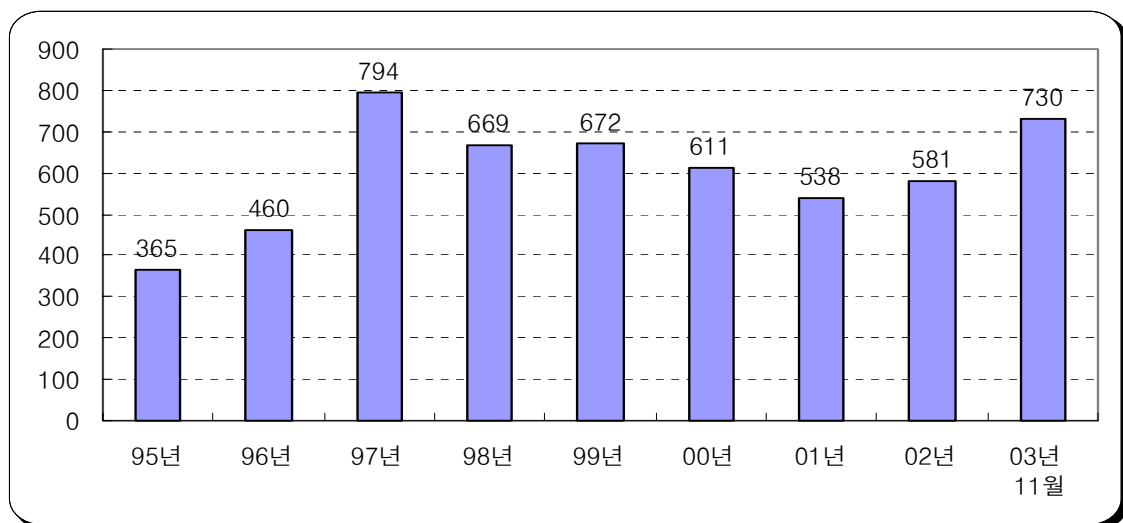
- 상계관세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첫째,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상계관세 산정방식이 덤핑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임.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도입 증가

□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WTO 출범 이후 다른 전통적인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위생이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장벽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호무역주의의 한 경향이라 볼 수 있음.

- 기술장벽 도입은 WTO체제 출범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38건, 2002년에 581건이 도입되었으며, 2003년에는 11월 현재 총 730건이 도입되었음.

<세계 기술장벽 도입 현황>



자료원 : TBT Committee,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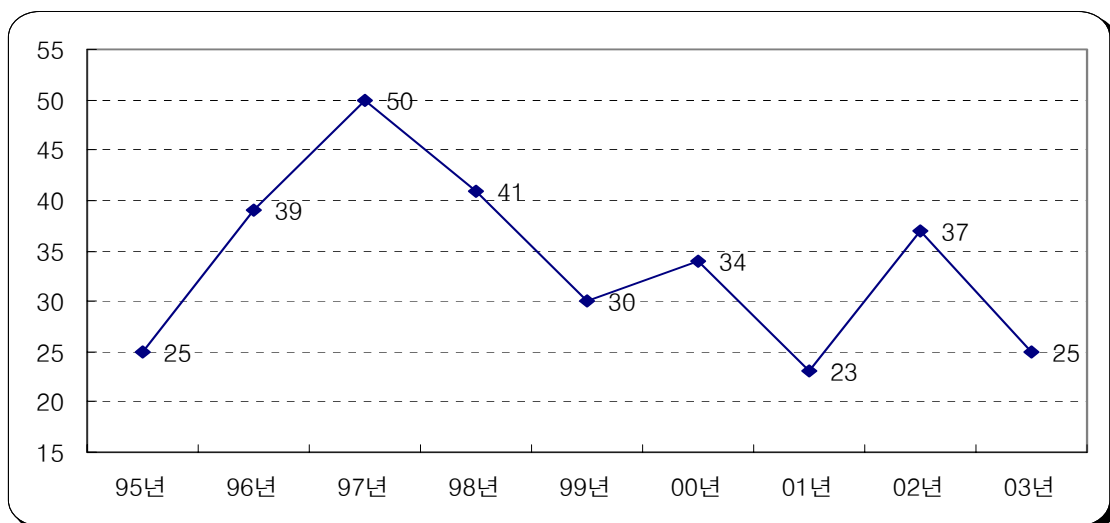
주) TBT 통보건수 기준

- WTO에 통보된 기술장벽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02년 기준 47.5%)
- 기술장벽은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국가간 무역 분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 무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미국이 WTO 협정위반으로 판결된 버드수정법을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해 EU, 일본, 캐나다 등이 對美 무역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국가간 무역 분쟁이 2003년 말 기준 304건에 이르러, GATT체제 50년 동안에 회부된 무역 분쟁건수(300여건)를 단 8년 만에 넘어섬
 - 이러한 국가간 무역 분쟁 증가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WTO체제 출범이후 무역 분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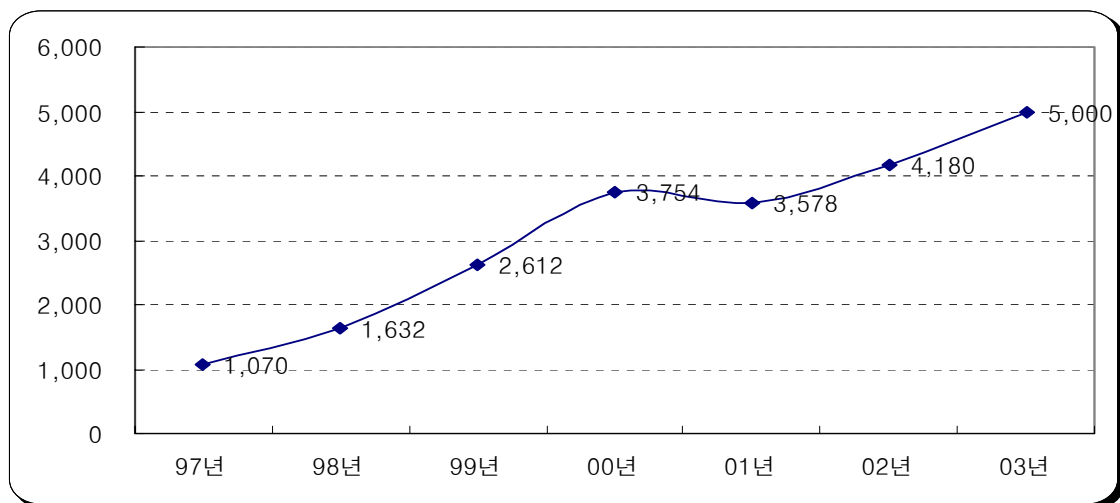


자료원 : Dispute Settlement Body, WTO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통상압력 강화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 4,180억 달러에 이어 2003년에는 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국 GDP의 약 5%에 달하는 규모임.
- 미국의 이러한 대규모 무역적자는 최근의 수출호조, 달러화 약세 정책 등에 힘입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올해 들어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적자 확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추이>



자료원 : 美 상무부, 03년은 추정치

단위 : 백만 US\$,

- 이러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무역수지적자 해결을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특히,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은 더욱 심해질 전망

WTO 칸쿤 각료회의 결렬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위기

□ 지지부진한 WTO DDA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WTO 칸쿤 각료회의가 농업, 싱가포르 이슈¹⁾ 등에 대한 회원국간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결렬되었음.

-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EU 등 선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2개 이슈만을 다자 규범화하는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개도국들은 어떠한 싱가포르 이슈도 공식 협상 의제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 농업 분야의 경우는 보조금 감축 또는 철폐, 시장접근 확대 등 모든 협상 이슈에 걸쳐 선진국과 개도국간 현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음.

□ 칸쿤 각료회의 실패는 DDA 협상 전반뿐만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줄 전망

- 향후 DDA협상은 협상 전반에 걸쳐 선, 후진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2004년 말의 협상타결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WTO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 이처럼 다자간 통상협상이 약화되고 세계 각국이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에 의존하여 다수의 경제블록을 형성할 경우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 경제블록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1) 최근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을 말함.

2. 2003년 수입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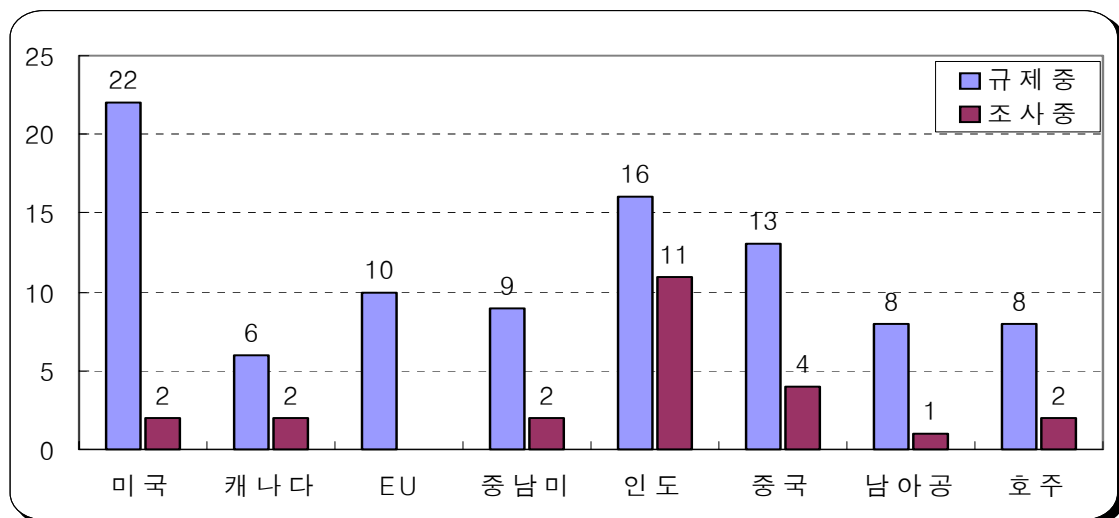
가. 총괄

□ 20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3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38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인 것은 108건이며, 조사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중으로 집계)은 30건임.

□ 국가별로는 인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4건, 중국 17건, EU 및 호주 각 10건, 남아공 9건 순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포함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9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11건 등임.

- 반덤핑 규제가 전체 수입규제의 대부분(86%)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45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13건, 기타 15건 등임.

- 석유화학제품은 인도(20건), 중국(11건), 철강제품은 미국(18건), 캐나다(8건), 섬유류는 중남미(6건), 터키(4건), 전기·전자는 EU(4건), 인도(3건)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2003년 신규 피소 건은 총 17건이며 개도국으로부터의 피소 건이 총 12건으로 전체 피소건수의 70%를 차지

[2003년도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일	피 소 품 목	제소국가	내 용
1	1. 16	인쇄용지	말레이시아	반덤핑
2	2. 27	PC 강선	미 국	반덤핑
3	2. 10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인도네시아	반덤핑
4	2. 10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인도네시아	반덤핑
5	2. 19	염화메틸(Methylene Chloride)	인도	반덤핑
6	5. 21	구조용 강관	캐나다	반덤핑
7	5. 21	Flexible Slabstock Poly	인도	반덤핑
8	6. 27	열전사 리본	미국	반덤핑
9	5. 30	클로로포름(Chloroform)	중국	반덤핑
10	6. 6	PSF(Polyester Staple Fibre)	인도네시아	반덤핑
11	7. 1	광섬유	중국	반덤핑
12	8. 20	열연강판	호주	반덤핑
13	8. 22	Propylene Glycol	인도	반덤핑
14	8. 22	PVC Paste Resin	인도	반덤핑
15	11. 19	PET 레진	브라질	반덤핑
16	11. 21	스테인레스 강선	캐나다	반덤핑
17	12. 17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중국	반덤핑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7건, 철강 4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4건이며, 피소 형태는 모두 반덤핑임.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3년 12월말 현재 총 2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6건(조사중 2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2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8건, 석유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5/23/1986	반덤핑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01/20/1987	반덤핑/ 상계관세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07/10/1990	반덤핑	Industrial nitrocellulose
06/05/1991	반덤핑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11/02/1992	반덤핑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12/30/1992	반덤핑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02/23/199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08/17/1993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08/19/1993	반덤핑	
08/11/1995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09/15/1998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05/21/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07/27/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08/06/1999	상계관세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2/10/2000	반덤핑/ 상계관세	Carbon steel plate
02/10/2000	세이프가드	Certain Steel Rod
02/10/2000	세이프가드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05/25/2000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08/14/2000	상계관세	Structural steel beams
08/18/2000	반덤핑	
05/18/2001	반덤핑	Stainless steel angle
09/07/2001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03/07/2002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7/23/2003	상계관세	D-RAM
08/11/2003	반덤핑	Polyvinyl Alcohol
12/08/2003	반덤핑	PC 강선
12/17/2003 (예비판정)	반덤핑	Wax / Wax Resin Transfer Ribbons(열전사 리본)

□ 2003년도에 신규 제소 당한 품목은 PC강선, 열전사 리본 등 2개 품목임.

[2003년 신규 제소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판정일
PC 강선	7312.10.3010 7312.10.3012	반덤핑	'03.2.27	'03.12.8 (상무부최종판정)
열전사 리본	3920.62 3926.90 등	반덤핑	'03.6.27	'03.12.17 (예비판정)

□ 미국은 2003년도에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음.

□ 2003. 12월 美 행정부는 2002. 3월부터 시행해온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음.

- 美 행정부는 지난 2002. 3. 5일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판재류 등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8~30%에 이르는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의 제소에 따라 WTO 세이프가드 협정위반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WTO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철강제품 수입증가와 국내산업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음.

[캐나다]

□ 2003년 12월말 현재 반덤핑 7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탄소강관	반덤핑	'82.9.14	'83.3.30	'84.6.27	'90, '95, '00년 각각 규제연장
아연도강관	반덤핑	'93.9. 7	'94.3.31	'94.7.9	'00. 1. 20일 규제연장
철 근	반덤핑	'99.6.16	'99.9.14	'00.1.12	
스텐레스봉강	반덤핑	'98.12.3	'99.2.18	'99.6.18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후 판	반덤핑	'93.10.18	'94.1.17	'94.5.17	
구조용강관	반덤핑	'03.5.21	'03. 8.19	'03. 11.17	
스텐레스강선	반덤핑	'03.11.21	-	-	
철강 5개 품목	세이프가드	'02.3.21	'02.7.4	-	최종판정 유보

□ 2003년 들어 신규 제소된 품목은 구조용 강관, 스텐레스 강선 등임.

- 구조용 강관은 2003. 4. 7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5. 21일 조사가 개시된 상태이며, 피소업체는 세아제강, 국제강재 등 8개 업체
- 스텐레스 강관은 캐나다 최대 스텐레스 제조업체인 Central Wire Industries社에 의해 제소되어 2003. 11 .21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우리 업체의 추정 덤핑마진율은 34%인 것으로 알려짐.

□ 2002. 7월에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받았던 철강 5개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규제대상 품목에 미국産 제품이 4개나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보복조치를 우려,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철근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캐나다는 무역에 있어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이지만, 유독 자국내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짙게 나타내고 있음.

- 캐나다 전체 수입규제의 약 75%가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을 반증하고 있음.
- 이처럼 캐나다가 국내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요인

으로는 90년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C\$49억)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인데다,

-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에 따라 철강수입이 급증하면서, 캐나다 철강업체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EU]

□ 2003년 12월말 현재 반덤핑 9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10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2건, 전기·전자 4건, 섬유 1건, 기타 1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3.5" 플로피디스크	반덤핑	'92.9.18	'94.9.10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반덤핑	'92.11.25	'95.3.27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브라운관	반덤핑	'99.9월	'00.10.20	
주철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99.5.29	'00.8.18	
PET칩	반덤핑	'99.11.6	'00.11.30	'03. 5월 재심 시작
전자저울	반덤핑	'99.9.16	'00.11.30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99.10.7	'00.12.28	'03. 12월 재심 시작
PET 필름	반덤핑	'00.5.27	'01.8.23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01.6.1	'02.8.24	'03.5월 관세율 인하
D-RAM	상계관세	'02.7.25	'03.8.11	관세율 : 34.8%

□ 2003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으며, 3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었음.

- '98. 2. 17일부터 스텐레스 웨스너에 대해 시행되어 오던 반덤핑 조치가 2003. 2. 2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90년부터 여러차례의 재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과되어온 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03. 9. 30일 부로 종료되었음.

- 또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철회 선언 이후, 2002. 9월부터 시행해 온 7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03. 12. 6일 부로 철회

[터 키]

□ 2003년 12월말 현재 4개의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올해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관세율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2.6	7.06%~21.2%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11.9%~24%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 6월	33.7%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2.2.15	3.51%~40%

□ 터키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섬유류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對터키 주종 수출품목은 섬유류로서, 과거 5년간 섬유류가 전체 對터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했는데, 이처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임.

□ 터키 정부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수출장려와 더불어 강력한 수입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對터키 수출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이러한 수입억제책의 일환으로 최근 터키정부는 반덤핑 조치가 원산지 변경 등의 우회수출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자, 과세기준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폴란드]

□ 2003년 12월말 현재 아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002. 6월에 12개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3. 2월 최종 판정에서는 8개 철강제품에 대해 2005. 3. 8일까지 2년간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결정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철강 8개 제품	'02.6.8	'02.8.19	'03.3.8	추가관세 : 9~15%

-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 철강 8개 제품은 flat hot rolled products, flat cold rolled products, flat galvanized products, organic coated flat products, other hot rolled bars, electrical sheets, seamless tubes, welded tubes 등임.

[멕시코]

□ 2003년 12월말 현재 2개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8.1.21	'98.8.19	일몰재심 조사개시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반덤핑	'99.12.14	'00.10.3	'01.6.22	반덤핑 관세부과 (16.03%)

□ 2003년 들어 우리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없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 잡화, 신발류 등의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 2003년 12월말 현재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류 2건, 기타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평판압연제품 (두께 3mm 미만)	반덤핑	'01.7.19	'02.4.30	'03.1.8	반덤핑 관세부과 (60.46%)
평판압연제품 (두께 3mm 이상)	반덤핑	'02.5.30	'02.12.16	'03.5.23	반덤핑 관세부과 (49.67%)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폴리에스터 합성 스테이플 섬유	반덤핑	'01.5.21	'01.11.8	'02.11.22	반덤핑 관세부과 (US\$0.85/kg)
아세테이트 필라 멘트 염색직물	반덤핑	'99.12.2	'00.11.23	'01.8.7	반덤핑 관세부과 (US\$8.73/kg)
소형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세이프 가드	'00.8.17	-	'01.7.2	적용기간 ('01.6.22 ~ '04.6.21)

□ 2003년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으며,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며, 폴리에스터 염색직물 및 나일론에 부과되어 오던 반덤핑 관세가 2003. 6. 22일부로 만료되었음.

- 2001. 7월에 제소되었던 평판압연제품(두께 3mm 미만) 1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확정판정(반덤핑관세 60.46%)이 2003년 1월에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평판압연제품(두께 3mm 이상)에 대해 49.67%의 반덤핑 확정관세가 부과되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2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03년 5월 출범한 Kirchner 정부는 희생중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억제 및 수출드라이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

[브라질]

□ 2003년 12월말 현재 반덤핑 2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섬유류 2건, 석유화학 제품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치내용
나일론 6번사	5402.31	반덤핑	'00.1.12	'01.6.28	반덤핑관세 (5.2%~52.2%)
폴리에스터직물	5407.61 5407.52	세이프가드	'02.10월	'03.1.27	수출자율규제
PET 레진	3907.60	반덤핑	'03.11월	-	

□ 브라질 정부는 2002. 10월 우리나라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통보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수출자율규제는 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3년에 15,606톤이며, 2004년에는 16,855톤임.

□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미국, 중국, EU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이는 섬유류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對브라질 수출품목이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이어서 브라질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섬유류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번에 PET레진이 신규 제소당한 것처럼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증가할 전망

- 이는 브라질 화학산업이 아직 유치산업이며, 브라질 국내 4~5개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이들이 브라질 정부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베네주엘라]

- ☐ 2003년 12월말 현재 신발류에 대해 1건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신발류	6402.20	'02.9.23	'03. 3. 20	-	55~78%

- ☐ 2003년도에 신규 제소된 건은 없으나, 2002. 11. 1일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U형강, I형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지난 3. 13일 무혐의 처리됨.

[이집트]

- ☐ 2003. 12월말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1건뿐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타이어	4011.10, 4011.20	'98. 9월	'99.7.8	'99.10.10	반덤핑 관세 (6.5%~17%)

- ☐ 이집트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철근, 전구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된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 등은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남아공]

□ 2003년 12월말 현재 9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으며, 2003년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었으나, 승용차 타이어에 부과되어 오던 반덤핑 관세가 2003. 9. 18일 부로 종료되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및 내용	최종판정일 및 내용
스텐레스 주방용기	'97.11.20	- '98.4.22 - 동원금속 : 무혐의 - 여타 6개사 : kg당 23.94 ~ 27.28란드 잠정관세	'98.10.21 예비판정과 동일
아크릴 담요	'98.4.28	- '98.12.18 - kg당 11.5란드 잠정관세	'99.6.18 kg당 5.76란드로 하향조정
스텐레스 용접관	'98.7.31	- '98.12.18 - LG금속 무혐의 - 여타업체가 수출할 경우 47.6% 잠정관세	'99.6.18 예비판정과 동일
카본 블랙	'98.8.21	- '99.2.5 - 40% 잠정관세부과	'99.9.10 예비판정과 동일
스텐레스 싱크대	'98.9.4	- '99.6.18 - 384.13% 잠정관세	'99.12.17 예비판정과 동일
광케이블	'98.10.2	- '99.8.20 - 잠정관세 부과면제	2000.3.31 반덤핑 관세(49.9%)
과산화수소	'99.5.28	- '99.8.27 - 한솔화학 : 147% - 동양화학 : 167%	2000.3.3 예비판정과 동일

품 목	조사개시일	예비관정일 및 내용	최종관정일 및 내용
Suspension PVC	2000.3.27	- 2000.12.15 - 42.31% 잠정관세	2001.6.15 예비관정과 동일
연선, 로프, 케이블	2000.9.13	- 2002.02.08 - 10.4% 잠정관세	-

[뉴질랜드]

- ☐ 2003. 12월말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등 2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관정
냉장고	8418.10 등	반덤핑	'01. 6. 10
세탁기	8450.11	반덤핑	'01. 6. 10

- ☐ 2001. 6월 이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없었으나, 2003. 4월 뉴질랜드 가전 업체인 “Fisher & Paykel”이 LG 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Fisher & Paykel”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세탁기에 자사 특허품인 SmartDrive 기술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뉴질랜드는 농·목축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 조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호 주]

□ 2003년 12월말 현재 8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2개 제품이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총 1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6건, 철강 3건, 전기·전자 1건이며, 2003년도에 열연강판이 신규 제소되었음.

- 또한, 우리나라 철강 중후판(Steel Sheet)에 대한 현지 업계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는데, 신청서류 미비로 관계당국에 의해 반려되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EPS	3903.11	반덤핑	'92. 1	'92. 11	'97. 1월 재심 '02. 9월 재심
Polystyrene Resin	3903.19 3903.90	반덤핑	'97. 12	'98. 12	'03. 12월 재심
PVC	3919.90	반덤핑	'99. 4	'00. 3	
동관	7411.10	반덤핑	'00. 10	'01. 4	
Polyols	3907.02	반덤핑	'01. 4	'02. 4	
열연형강	7216 일부	반덤핑	'01. 11	'02. 7	
세탁기	8450.11 8450.20	반덤핑	'02. 7	'03. 9	
HDPE	3901.20	반덤핑	'02. 10	'03. 12	
LLDPE	3901.10	반덤핑	'02. 10	-	'03. 6월 예비판정 잠정관세 부과 중
열연강판	7208.51 7208.52	반덤핑	'03. 8	-	

□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 정책과 더불어 반덤핑 규제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비관세 장벽 중에서도 까다로운 검역을 통한 통관지연과 반덤핑 규제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중 국]

□ 2003년 12월말 현재 반덤핑 17건(조사중 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1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3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신문용지	반덤핑	'97.11.10	'98. 7. 9	'99 .6. 3	55~78%
폴리에스테르필름	반덤핑	'99. 3.16	'99.12.29	'00. 8.25	13~46%
스텐레스냉연강판	반덤핑	'99. 6.17	'00. 4.13	'00.12.18	6~58%
염화메틸렌	반덤핑	'00.12.20	'01. 8.16	'02. 6.20	4~66%
폴리에스터단섬유	반덤핑	'01. 8. 3	'02.10.22	'03. 2. 3	2~48%
폴리에스터칩	반덤핑	'01. 8. 3	'02.10.29	'03. 2. 3	5~52%
아크릴레이트	반덤핑	'01.10.10	'02.12. 5	'03. 4.10	2~49%
아트지(동판지)	반덤핑	'02. 2. 6	'02.11.26	'03. 8. 6	4~71%
무수프탈산(PA)	반덤핑	'02. 3. 6	'03. 1. 7	'03. 9. 6	4~66%
합성고무(SBR)	반덤핑	'02. 3.19	'03. 4.16	'03. 9. 9	7~38%
냉연강판	반덤핑	'02. 3.23	'03. 5.20	'03. 9.23	3~55%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PVC	반덤핑	'02. 3.29	'03. 5.12	'03. 9.29	6~84%
TDI	반덤핑	'02. 5.21	'03. 6.10	'03. 11.22	3~49%
페놀	반덤핑	'02. 8. 1	'03. 6. 9	-	7~144%
클로로포름	반덤핑	'03. 5.30	-	-	-
광섬유	반덤핑	'03. 7. 1	-	-	-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반덤핑	'03. 12.17	-	-	-

□ 2003년도에 신규 제소된 우리나라 제품은 클로로포름, 광섬유,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등 총 3건임.

[2003년 對韓 신규제소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클로로포름	2903.13	반덤핑	2003.5.30
광섬유	9001.10	반덤핑	2003.7.1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	반덤핑	2003.12.17

□ 2003년 중 중국의 전체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6건으로 2002년(9건)에 비해 감소하였음.

- 이처럼 2003년도에 중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치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첫째, 2003. 4월 이후 3개월간 사스 발생으로 인해 대외교역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 둘째, 지난 1~2년간 반덤핑 조사 착수가 급증한 까닭에 신규 수입규제보다는 기 착수 사항에 대한 후속업무가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 셋째, 최근 중국산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으로 제소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의식하여, 기존의 공세적 통상정책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지난 12. 25일부로 2002. 11월부터 철강 5개제품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음.

- 미국, EU에 이은 중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로 세계 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美, 中, EU 등에 대한 철강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

- 또한, 철강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가파르게 치솟던 철강가격 상승세도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임.

□ 2003. 12월 말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 대해 총 2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17건에 달해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임.

- 이처럼 우리 상품에 대한 규제가 빈발한 것은 중국의 공업화 급진전으로 인해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세계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한·중 양국 상품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일 본]

□ 20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유일함.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01.4.23	'02.7.27	덤핑마진 : 32.5%

□ 일본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임.

- WTO 창설 이후 현재까지 일본이 취한 반덤핑 조치는 단 3건에 불과

- 이처럼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 산업보호나,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벳짚에 대해 검역을 강화, 수입승인 품목제도를 운영하는 등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일본은 자국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지, 토마토, 피망 등을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동 품목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일본이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은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 만]

□ 2003년 12월말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시멘트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
H Beam	'96. 7월	'98. 12월	31.48%
강 선	'97. 8월	'98. 12월	25.39%~42.38%%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거	'01. 6월	'02. 7월	110.99%~126.81%

[인 도]

□ 2003. 12월말 현재 반덤핑 규제 22건(조사중 10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4건 등 총 2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20건, 전기·전자 3건, 섬유류 2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반덤핑 규제중 (12개품목)	폴리에스터 필름	○ '00. 3 조사개시, '00. 11 예비판정, '01. 3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0.36~0.98/kg
	옥소알콜	○ '98. 2 조사 개시, '99. 2 예비판정, '00. 7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폴란드, 러시아, 이란, 미국, EU, 사우디,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115~225/톤
	아크릴 단섬유	○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 A/D관세(한국) : US\$ 0.534/kg ○ 01.8월 재심 개시
	폴리스티렌	○ '97. 9 조사개시, '98. 5 예비판정, '98. 7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31.37~40.09/kg
	EPM & EPDM	○ '99. 9 조사개시, '00. 5 예비판정, '00. 9 최종 판정 ○ A/D관세(한국) : US\$ 2,445~2,461/톤
	광섬유	○ '99. 7 조사개시, '99. 11 예비판정, '00. 6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US\$ 2.32~8.96/km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반덤핑 규제중 (12개품목)	합성고무	○ '98. 2 조사개시, '99. 1 예비판정, '00. 5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일본,대만,터키,프랑스,미국,독일 ○ A/D관세(한국) : US\$ 1.15~1.41/kg
	NBR	○ '96. 3 조사개시,'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검토(유지)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한국) : US\$ 248.35~679.10/톤
	NaCN	○ '99.3 조사개시, '99.10 예비판정, '00.3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 A/D관세(한국) : US\$ 1,608.16/톤
	배터리 (LLAB)	○ '00. 12 조사개시, '01. 3 예비판정 ○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 A/D 잠정관세(한국) - 산업용 : US\$ 3.1928/kg - 자동차용(NMF) : US\$ 2.216~2.532/kg - 자동차용(MF) : US\$ 1.904~2.121/kg ○ '01.12월 최종 판정
	냉연 압연롤	○ '03.1.1 잠정관세, '03.7.2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 A/D관세(한국) : US\$2,838.19/톤 ○ 잠정관세 부과 기간 : 2003.1.1~2003.6.30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 sulphite)	○ '03.4.1 예비판정, '03.10.20 최종판정 ○ 제소자 :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한국) : 수출가(CIF)의 98.01%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중 (7개품목)	POY	○ 01. 8 조사 개시, 01. 11 예비판정 ○ 대상국 : 한국, 터키 ○ A/D 잠정관세(한국) : US\$ 0.358/kg
	PIB	○ 01. 9 조사개시, 현재 조사중 ○ 01.12월 잠정관세 ○ 관련국 : 한국
	폴리에스터 단섬유	○ 99. 1조사개시, 99. 9 예비판정, 00. 1월 최종판정(무혐의 판정), 01. 6 덤핑 재조사 ○ 02.7월~2003.1.9일 잠정관세 부과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 A/D 잠정관세(한국) : US\$1.264/kg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 대상품목 : HS2836.40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 대상국 : 한국 ○ 잠정관세 : 2003.4.30~2003.12.9일 ○ A/D관세 : 128.29/톤
	Copper Clad Laminates	○ 대상품목 : HS 8455.30 ○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 잠정관세 : 2003. 1. 1 ○ AD관세 : 26.67% ~ 46.61%/톤
	염화메틸	○ 대상품목 : HS2837.20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Chemplat Sammar and S.R.F Ltd. ○ 대상국 : 한국 ○ 규제형태 : 조사개시(2003.2.19)
	가성소다	○ 2001. 4월 제소 ○ '01.5월~2002. 3월 조사 ○ 조만간 잠정관세 부과 예상 ○ 반덤핑 관세율 : 353.4불/톤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용
반덤핑 조사중 (3개품목)	Flexible Slabstock poly	○ HS code : 2836.40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조사개시일 : 2003. 5. 21
	Propylene Glyco	○ 대상국 : 한국, 미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조사개시일 : 2003. 8. 22
	PVC Paste Resin	○ HS code : 390242.110 ○ 대상국 : 한국, 사우디, 유럽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조사개시일 : 2003. 8. 22
세이프가드 규제중 (4개 품목)	GFO	○ '00. 7 조사개시, '01. 1 최종판정 ○ SG Rate - '01. 1. 24~'03. 1. 23 : 20% - '03. 1. 24~'03. 7. 23 : 15%
	페놀	○ '99. 2 조사개시, '99. 6 발동, '01.5 2년간 연장 ○ SG Rate - '01. 6. 30~'02. 6. 29 : 10% - '02. 6. 30~'03. 6. 29 : 7%
	아세톤	○ '99. 6 조사개시, 99. 7 발동 ○ SG Rate - '01. 1. 27~'02. 7. 26 : SG Rate 21%와 Rs 2,250/톤 중 낮은 것 적용 - '02. 7. 27~'03. 7. 26 : SG Rate 9%와 Rs 965/톤 중 낮은 것 적용
	ECH	○ 2002. 3월 조사 개시 ○ 대상업체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 적용일 : 2002.10.29 ○ SG Rate : 12%
상계관세 조사중 (1개품목)	NBR	○ '00. 1 상계조치 제소, 조사 중 * 이 품목은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중이며, 반덤핑과는 별개로 상계관세 혐의 조사 중

□ 2003년도에는 총 4개 품목이 신규 제소되었으며, 2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되었음.

- 신규제소된 품목은 염화메틸, Flexible Slabstock Poly, Propylene, PVC Paste REsin 등임.

-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된 품목은 나일론 코드지와 Pure Terephthalic Acid(PTA) 등임.

□ 인도 정부가 2005년까지 WTO에 양허한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매년 5%씩 기본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관세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인도의 2002/03 회계연도중 인도 정부의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01/02 회계연도의 20건에 비해 50%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인도네시아]

□ 2003년 12월말 현재 5건의 반덤핑 규제(모두 조사중)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2건, 섬유류 1건, 제지류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제소일	진 행 상 황
무수푸틸산	2917.35	반덤핑	'02.4.22	최종판정 대기중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잠정관세 부과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제소일	진 행 상 황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조사중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10.11	반덤핑	'03.2.10	조사중
PSF	5503.20	반덤핑	'03.6.6	제소 접수

주) PSF(Polyester Staple Fiber)의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에 제소 접수된 상태여서 조만간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조사중으로 집계

□ 2003년도 수입규제 변동내역은 신규 제소 3건, 최종 덤핑관세 부과 철회 1건 등 총 4건임.

- 신규 제소된 품목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필기 및 인쇄 용지, PSF 3개 품목이며,
- 철망간/규소망간의 경우 2002. 11. 16일 산업무역부에 의해 19%의 덤핑관세 부과 확정 판결이 났으나, 재무부의 최종 판정에서 덤핑관세 부과가 철회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수입규제를 잘 활용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일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일부품목에 대해 덤핑혐의 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임.

[태 국]

□ 2003년 12월말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으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H 형강	7216.33	반덤핑	'97.4.25	'98.4.15	반덤핑관세 (31.65%~44.70%)
열연강판	7008.10 등	반덤핑	'02.7월	'03.6월	반덤핑관세 (13.96%)
스텐레스 압연강판	7219.32 등	반덤핑	'02.11월	'03.3월	반덤핑관세 (50.99%)

□ 무수프틸산의 경우 2002. 2.15일 조사가 시작되어, 2003. 8. 6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

- 이 외에 98. 8월 이후 H 형강에 부과되어 온 반덤핑 관세가 금년 8월중에 종료됨에 따라, 태국 업계의 반덤핑관세 연장요청에 의거 현재 재심 중에 있음.

[말레이시아]

□ 2003년 12월말 현재 제지류에 대해 2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클판지	반덤핑	'97.7.25	'98.4.3	17.3%~35.4%의 반덤핑 관세 부과
인쇄용지	반덤핑	'03.1.16	'03.9.26	'03.9월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 : 43.24%)

□ 2003년도에 신규 제소된 제품은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인쇄용지(HS코드 : 4801.00)임.

-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인쇄용지 산업협회의 제소에 의해 2003. 1.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5. 16일 예비판정 결과 덤핑 마진율이 8~43%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됨.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와 일부 섬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입 의존형 구조를 띄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건수는 평균 3건 전후에 머물고 있음.

다. 2003년 수입규제 특기사항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상공세 강화

□ 2003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특기사항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 및 금융 산업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비쳐지면서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임.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잇따른 상계관세 부과이며, 이 외에도 조선 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EU와의 통상마찰, 제지업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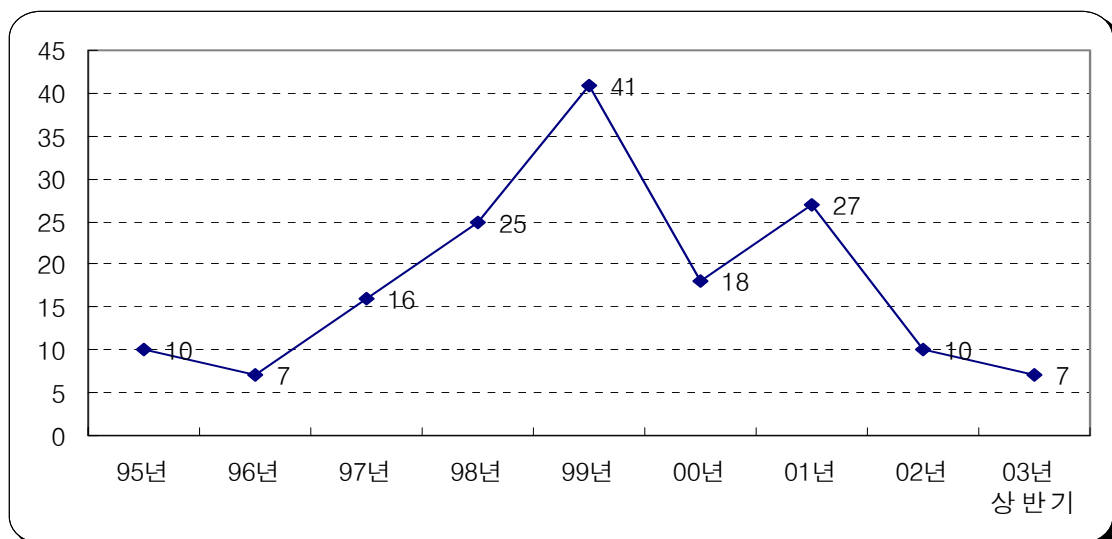
-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상마찰은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합의하에 추진되었던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WTO와 IMF라는 경제규범 체제간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최근 들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보조금 논란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금융기관 지배 문제와 보조금 지급의 특정성 여부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문제의 경우,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커지면서 일부 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 또한, OECD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세제지원이나,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과 관련이 없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가 급증했던 것은 우리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조치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

[우리나라 상계관세 피소 추이]



자료원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주) 상계관세 조사개시 기준

[D-RAM 반도체]

□ 美 상무부는 2003. 11. 21일 마이크론社의 제소에 따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2003. 6. 17일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美 국제무역위원회도 2003. 7. 23일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내렸음.

- 美 상무부는 지난 최종판정에서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해 44.71%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소마진(0.04%)으로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예비판정 이후 정부와 업계의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예비판정 결과(57.37%)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는 상무부가 부과한 상계관세(44.71%)보다 조금 하향 조정된 44.29%의 상계관세가 최종 확정되었음.

□ 美 상무부의 이번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韓-美 양국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조세감면 및 R&D 지원 등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임.

- 美 상무부는 채권단의 하이닉스 구조조정 조치가 채권단의 자율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과 조세감면 및 R&D 지원이 반도체 기업에게만 수혜된 특정성을 가진 금지보조금 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가 자율적, 상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정부의

은행 지분소유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과 조세감면 및 R&D 지원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특정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대응논리를 펼쳐왔음.

□ 미국에 이어 EU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고 있음.

- EU 집행위는 2003. 4.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33%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데 이어, 2003. 8. 11일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 때보다 조금 상향 조정된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EU 집행위는 최종판정에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무 재조정 등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였음.

- EU 집행위는 산업은행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적기관이며, 동 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제공하지 않았을 특혜적 행위라는 점과 2001. 10월의 채무재조정이 상업적 판단 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판정하였음.

□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결정에 대해 2003. 8월에 WTO에 제소하였음.

- 정부는 이후 美, EU측과 각각 2차례씩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2003. 12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음.
- 일반적인 경우 패널이 설치된 후 최종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되는데, 향후 패널과정에서 美, EU측의 상계관세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한-EU 조선분쟁]

□ 2003. 6. 11일 EU 집행위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한-EU 조선분쟁에 대해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음.

- EU는 '99년에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며, 2002년 10. 21일 WTO에 공식 제소하였으며, 이후 양국간에 세 차례의 양자협의를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 EU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 제작금융과 한라중공업, 대우중공업, 대동조선에 대한 부채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의 구조조정 조치가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작업은 IMF의 권고와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EU의 패널설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2003. 9. 3일 EU의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맞제소 하였음.

- EU는 2000년 말까지 조선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등 3대 선종에 대해 계약가액의 6%까지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있음.

- 이번 제소에 따라 韓-EU 양자협의를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분쟁은 보조금 협정의 신속절차가 적용되어 5개월 정도 걸릴 예정

[제지 업계]

□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03. 4월 발표한 『200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수출보조금 분야에서 제지업계에 대한 저리 금융 및 세제특혜 문제를 지적

- 주요 내용은 신호제지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6,300억원 출자전환, 한국제지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계성제지의 법정관리 기간 중 정부의 보호 등이 정부의 실질적이고 특정성 있는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임.
- 현재, 美 임업·제지협회가 이 문제를 조사 중에 있으며, 미국 정부는 우리 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업계와 함께 향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美, 中,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철폐

□ 2003년에는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철회 선언에 이어 중국, EU 등도 세이프가드를 철폐하였음.

- 美 행정부는 지난 2002. 3. 5일부터 시행해오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동 조치를 철회하였음.
- EU도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철회 선언 이후, 2002. 9월부터 시행해온 7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03. 12. 6일 부로 철회
- 美, EU에 이어 중국도 2003. 12. 26일부로 2002. 11월부터 시행해오던 철강세이프가드를 철회해 세계 철강수급 상황이 안정될 전망

3. 2004년 수입규제 전망

가. 총 괄

□ 2004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호전되는 가운데,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 그러나, 미국의 고용개선 미흡, 쌍둥이 적자 확대, 테러 확산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또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간의 빈번한 무역마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될 우려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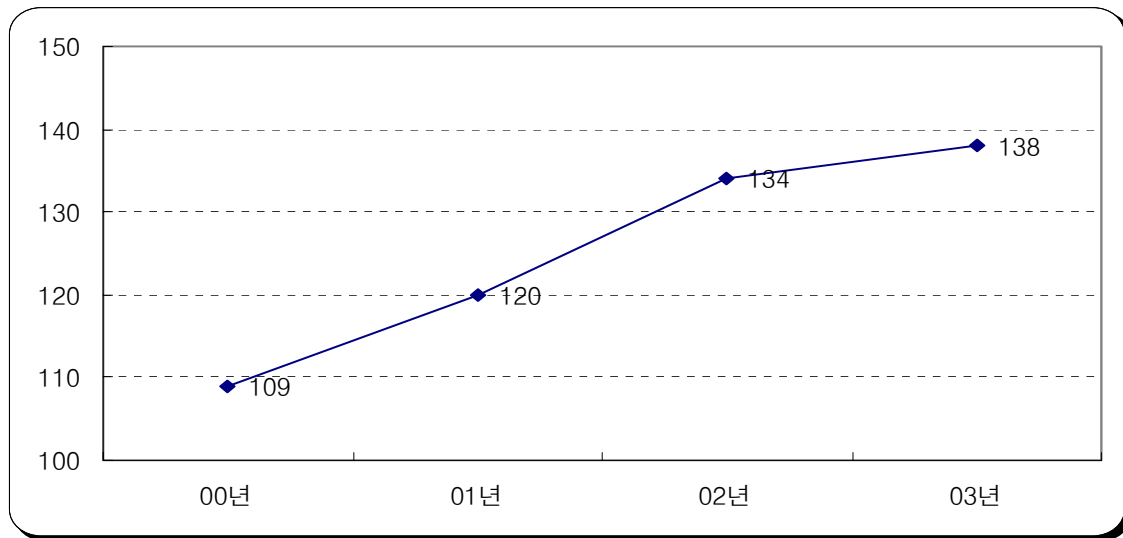
□ 2004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 무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세계 교역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04년에는 미국의 버드법안 철폐지연에 대한 EU, 日 등의 對美 무역보복이 본격화되고, 美-EU, 美-中 간의 통상마찰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자칫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미국, EU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발동국 외에도 중국,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주요 개도국들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 2003년 12월말 현재 對韓 수입규제 건수가 138건으로 2002년 말의 134건에 비해 4건 증가하는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오고 있음.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추이]



- 2004년에 국가간 무역마찰이 심화되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섬유, IT 산업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올해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나. 주요국별 전망

[미 국]

- 2004년 미국 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설비투자 확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3~3.5%)을 웃도는 4%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몇가지 측면에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가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실업문제가 심각한 산업분야는 수입규제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조업계의 뿌리 깊은 동아시아 피해의식 : 섬유 등을 비롯한 美 제조업계 전반은 우리나라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 대해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수입규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철강세이프가드 철폐로 인한 개별 규제 빈발 : 철강세이프가드로 인해 그 동안 미국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이뤘던 철강 부문에서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이제 동 규제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개별적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활성화 될 전망
 - 2004년 대선 : 철강세이프가드 자체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정치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는 바, 부시 행정부는 분야에 따라 2004년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섬유제품, 제지류 등에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 될 전망
- 철강의 경우 최근 철강세이프가드 철폐로 인해 미국 업계의 제소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美 섬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섬유쿼터가 완전히 해제되는 2005년부터는 수입규제 발동이 빈번할 전망
 -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03. 4월 발표한 『200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제지업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실질적이고 특정성 있는 보조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美 임업·제지협회가 이 문제를 조사 중에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의 제지류 수출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등과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EU]

- 2004년도에도 환경문제가 EU 통상정책의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엄격한 환경기준 등과 같은 EU의 비관세 장벽이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
 -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로 무역/통상조치 제, 개정 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
- EU의 수입규제 방향은 반덤핑이나 수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을 이유로 한 조치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들이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폐가전 지침이 사실상 확정되어 제조업체에 무료수거 및 일정수준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
 - 모터사이클 및 3륜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과 전자오븐과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규정 강화
 - 환경마크인 에코라벨도 계속 확대 추세 : 현재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장갑, 완구 및 게임 등 무려 33개 품목군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제정가능성을 조사중
- 2004년도에 EU는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美-EU 양국간 불안한 통상환경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철폐에 따라 EU 역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폐하였으나, 버드(Byrd) 수정법 폐지 논란, 미국이 자국기업의 수출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해외판매법인 우대세제(FSC)와 대체입법(ETI)에 대한 무역보복 등 미국과 EU 간에 통상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중 국]

□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시장이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입품의 덤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사전 모니터링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韓-中 무역불균형 추세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對韓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국내시장은 최근 농산물과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상품이 공급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가 수출상품은 언제든지 반덤핑 조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 중국은 수입품의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섬유, 화학, 농업, 정보통신, 자동차, 비료, 제철분야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큼

□ 2004년도에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17건 중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으면, 2003년도에도 화학제품 2건이 신규 제소를 당하는 등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추세임.

[인 도]

□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WTO와의 양허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 중이어서 수입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인도의 2002/03년 회계연도 무역수지 적자액이 77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2003/04년 회계연도에도 무역수지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

- 또한, 인도는 WTO와의 관세양허 협정에 따라 2005년까지 기본 관세율을 매년 5%씩 인하하고 있어, 수입증가를 우려하는 인도산업계의 수입규제 요구도 늘어날 전망

□ 2004년도에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는 화학, 철강, 직물류 등임.

- 이들 제품은 우리의 對인도 주력 수출품목인데, 최근 인도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산업계에서 수입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남아공]

□ 남아공은 인근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블록 형성, 미국, EU 등과의 FTA체결을 목표로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수입규제 추세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

- 그러나, 최근 란드화의 강세추이가 이어짐에 따라 남아공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 급증으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가 중국 및 동남아산 저가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 2004년도에 남아공으로부터 신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화학제품, 인쇄용지 등임.

- 화학제품은 안정적인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할 경우 수입규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인쇄용지는 2003년 수출증가율이 200%를 넘어서 남아공 제지업체가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남미]

□ 2004년도에 중남미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여 연간 3~5%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채무협상의 난항,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간의 갈등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르헨티나는 폐소화 약세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에서 자국 상품들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한국산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동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브라질 역시 2004년도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 수출이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ABS수지, 고밀도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이 수입규제를 받을 수도 있음.
- 멕시코의 경우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류, 신발, 전자제품 등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전망

[호 주]

- 호주는 최근 들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품목(자동차, 섬유, 의류, 신발류 등)에 대한 고관세 정책과 함께 반덤핑 규제를 거침없이 발동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갈수록 강화될 전망
- 특히,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호주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상으로 인해 호주 제조업체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첨 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3년 12월말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미 국	16(2)	1	5	2	24(2)
캐나다	7(1)			1(1)	8(2)
EU	9	1			10
터 키	4				4
폴란드				1	1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4			1	5
브라질	2(1)			1	3(1)
베네주엘라				1(1)	1(1)
이집트	1				1
남아공	9(1)				9(1)
뉴질랜드	2				2
호 주	10(2)				10(2)
중 국	17(4)				17(4)
일 본	1				1
대 만	3				3
인 도	22(10)	1(1)		4	27(11)
인도네시아	5(5)				5(5)
태 국	3(1)				3(1)
말레이시아	2				2
합 계	119(27)	3(1)	5	11(2)	138(30)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3년 12월말 현재)

국 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 타	합 계
미 국	18	3	1	1	1	24
캐나다	8					8
EU	2	2	1	4	1	10
터 키			4			4
폴란드	1					1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2		2		1	5
브라질		1	2			3
베네주엘라					1	1
이집트					1	1
남아공	2	3	1	1	2	9
뉴질랜드				2		2
호 주	3	6		1		10
중 국	2	11		1	3	17
일 본			1			1
대 만	2				1	3
인 도	2	20	2	3		27
인도네시아		2	1		2	5
태 국	3					3
말레이시아					2	2
합 계	45	48	17	13	15	138